

**2022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규정**



소명여자중학교

I. 체험학습의 근거 및 목적

1. 근거

체험학습은 교육부(1998)에서 '새 학교문화 창조'를 위한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다양한 체험 학습 수행' 및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 I'(교육부,1999)의 내용 중 '책가방 없는 날, 도시와 농.어촌 교류 체험학습, 현장 학습 등과 관련한 효율적인 지원 방안' 그리고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제48조(수업 운영 방법 등) 제5항에서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 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규정에 근거한다.

2. 목적

현실로부터 유리된 이론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학생들이 지역 사회의 일터를 학습장으로 이용, 직접 체험하고 봉사하며, 나아가 진로 탐색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학생 축제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한다.

II. 체험학습의 범위

체험학습은 그 활동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다. 본교는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문 초등교육과-894(2004.03.12)를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학교현장체험학습

학교의 교육계획에 의한 공동체험학습을 말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현장체험학습(소풍)
- ② 수학여행
- ③ 야영훈련
- ④ 교내체육대회
- ⑤ 봉사활동
- ⑥ 각종 공연 관람
- ⑦ 청소년 단체 활동(청소년 연맹 및 동아리 활동)
- ⑧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공동체험활동

2.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개인별 희망학교 및 학교(장) 간의 학생교류, 교환 계획(합의)에 의해 실시하는 체험학습을 말한다. 개인별 신청의 경우 사전에 부장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판단, 결정한다. 절차 및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절차

- ① 교류(교환) 체험학습 1개월 전 학생 및 학부모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한다.
- ② 담임교사가 학교장의 결재를 득 한 후 학교장이 현지학교장과 협의한다.
- ③ 교환학습 15일전 교무정보부 학적계에서 교환학습 의뢰서를 발송한다.
- ④ 교환학습 후 교환학습결과 통보서를 접수하여 담임교사가 학교장 결재를 득한 후 보관한다.
- ⑤ 학생 및 학부모는 교환학습 소감문을 제출해야하며 이를 담임교사가 학교생활기록부 근거 자료와 함께 보관한다.

2) 규정

- ① 기간 : 연 1회, 1개월 내로 한다.
(단, 프로그램의 길이 및 거리에 따라 학교장이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 ② 교환학습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단, 교환학습 시 결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 ③ 담임교사는 교환학습 내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한다.
(예: 2001.05.01 - 05.20(9일간) 경기도 가평 중학교에서 교환학습 실시함)
- ④ 대상지역 : 국내 소재 학교(국외는 제외)

3. 학교장허가 교외 체험학습

가족과 함께 경로 효친의 전통 문화 및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지역사회의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노작, 견학 등의 체험학습을 말하며 그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체험학습의 목적, 유형, 기간, 내용 등이 학교의 규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학생 간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는 상업적인 내용의 체험학습이라 판단될 경우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절차 및 인정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절차

- ① 학습 3일 전 학생 및 보호자가 교외 체험학습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한다. (양식은 쿨박스-교무기획부-기획계 폴더에 탑재)
- ② 학교는 현장체험학습 신청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득한 후 가정에 통보한다.
- ③ 체험학습 시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자로 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위임장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음)
- ④ 보고서는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한다.
- ⑤ 학교의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 ⑥ 보호자와 담당교사는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학생안전 여부를 확인한다.

2) 학습형태

- ① 가족동반여행
- ② 친.인척 방문
- ③ 답사. 견학활동
- ④ 체험활동
- ⑤ 가정학습

3) 인정범위

- ① 사전에 결재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학기 중에 실시하는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을 출석으로 인정한다.
- ②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국내외 연간 20일 이내로 한다.
단,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범위에서 가정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¹⁾ **다만,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제외)은 20일**

1)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초등학교) 57쪽 166쪽, 2022학년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중

을 초과할 수 없다.

- ③ 학교의 연간 '학교장 허가 교외 체험학습' 출석 인정 일수를 초과하거나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을 실시할 경우 '미인정 결석'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 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보고서 제출 후 '학교장' 의 최종 판단에 따라 '기타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 ④ 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운영할 수 없으며 1일 단위로 운영한다.
- ⑤ 기타의 사항들은 부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4) 체험학습 불허 사항

- ① 학기 시작 후 일주일(학부모 동의서 제출 시 검토 가능)
- ② 시험기간(정기고사, 영어듣기평가, 교육청평가 등)
- ③ 성적 이의 신청 기간(학부모 동의서 제출 시 검토 가능)
- ④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학원수강, 상급학교 입시를 위한 준비와 훈련,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의 미인정 결석 처리사안
- ⑤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5) 결과처리

- ① 신청서와 보고서, 기타 증빙 서류는 취합하여 5년간 보관한다.
- ②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한다.

4. 정규수업시간을 통한 열린 수업 체험학습

정규 수업시간에 연간계획 및 학습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 ① 계발활동의 전일제
- ② 교과별 사전계획에 따른 인성교육강화 및 현장체험학습활동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2)

담임	교무부장	교감	교장
			전결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본교의 출석인정기간 연간 20 일 ³⁾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 학교의 체험학습 연간 인정기간을 초과하거나 체험학습 통보서의 허가 기간을 초과한 체험학습의 경우에 대하여는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함 단, 천재지변이나 현지교통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허가기간을 초과한 경우는 '학교장'의 최종 사후 판단에 따라 '기타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이때 학교장 내부결재 필요)					
하단에 명시 된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기간 확인					보호자 서명	
* 필요시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학습형태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목적지				(숙박시) 숙박장소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인솔자명 ⁴⁾	관계		연락처			
목적(사유)						
교외 체험 학습 계획						
위와 같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소명여자중학교장 귀하						

-----절 취 선(이하 담임 작성)-----

소명여자중학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통보서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학교의 출석인정 기간 연간 20 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허가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금회까지 누적 사용기간 ()일	다음과 같이 처리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						
소명여자중학교 ()학년 ()반 담임 : (인)						
보호자님 귀하						

사유⁵⁾ :

- 2) 체험학습예정일 **3일** 전까지 제출한 신청서에 한하여 인정결석으로 처리되며, 신청 시기를 넘길 시, 미인정결석 처리함.
- 3) **체험학습 불허기간** : 학기 시작 후 일주일, 지필평가기간, 성적 이의 신청기간,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4)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로부터 위임 받은 자로하며 안전한 체험학습 인솔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으로 한다. (위임장은 체험학습 신청서로 대신함).
- 5) 사유란은 체험학습을 허가하지 않을 경우 이유 등을 입력함.
- 5)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해야 함.**
-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 국외의 경우 날짜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비행기표, 선박티켓 등) 사본을 제출 함.

<서식 2>



불허 기간 중 교외 체험학습신청 학부모 동의서

학생인적사항	학년 · 반	학년 반 번	이름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위 학생은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불허 기간(학기 시작 후 일주일, 지필평가기간, 성적 이의 신청기간) 중 부득이하게 체험학습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체험학습 불허 기간 동안의 결석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예: 학기초_각종 선택 활동 선택권 포기, 평가기간_무단결석처리, 성적 이의 신청기간_이의신청 포기)을 감수할 것을 동의하고 현장체험학습을 신청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소명여자중학교장 귀하

<서식 3>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담임	교무부장	교감	교장
						전결
성명		학년 반	제 학년 반 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20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교외체험학습 장소						
학습형태	◦ 가족동반여행() ◦ 친·인척 방문() ◦ 답사·견학 활동() ◦ 체험활동()					
제 목						
* 날짜별로 느낀 점, 배운 점 등을 기록합니다.(필요 시 사진 등은 뒷면 부착, 용지가 부족한 경우 별지를 사용)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위와 같이「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보호자 :	(인)
					학생 :	(인)
소명여자중학교장 귀하						

〈서식 4〉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성명			학년	반	번	휴대폰	
본교 출석인정기간 연간(40)일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일간
	우리 학교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세부 규정 및 불허 기간 확인 ※ 담임교사와의 사전 협의 또는 문의						(○, ×)
학습형태	가정학습						
목적지							
보호자명		관계				휴대폰	
인솔자명		관계				휴대폰	
목적							
교외체험 학습계획	교시	교과	※ 학습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1	수학	3.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교과서 (42쪽-45쪽) 문제풀기, 결과물 사진 찍어 전송				
	2	사회	4. 시장경제와 가격, 교과서 (70-73쪽), 교과서 참고하여 학습지 완성하여 전송				
	3	국어	3. 신라의 건국과 발전, 교과서 (56-60쪽) 교과서 참고하여 학습지 완성하여 제출하기				
	4	영어	2. Enjoying Local Culture C.대본(교과서163쪽참고) 녹음하여 전송				
	5	진로	다섯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나, 학습지 완성하여 전송				
	6	음악	교과서 100쪽 리코더 연습하기, 결과물 영상 찍어 전송하기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보호자 : (인) 학생 : (인) </div> 소명여자중학교장 귀하							

- ※ 신청서 제출 기한은 3일 이전, 보고서 제출 기한은 7일 이내
-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 ※ 체험학습 불허기간 : 학기 시작 후 일주일, 지필평가기간, 성적 이의 신청기간, 체험학습 운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의 체험학습,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 ※ 교외체험학습 실시 중에는 보호자와 담임교사 간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사안(사고) 발생 시 보호자는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하도록 합니다.

<서식 5>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담임	부장	교감	교장

성명			학년 반		체	학년	반	번	
교외체험학습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교외체험학습 장소									
학습형태	가정학습(○)								
제목									
교외체험 학습결과	교시	교과	학습내용 (※ 학습계획서에 따라 학생이 공부한 학습결과물, 작품 등을 결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학습확인	
	1	수학	3.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교과서 (42쪽-45쪽) 문제풀기, 결과물 사진찍어 전송						
	2	사회	4. 시장경제와 가격, 교과서 (70-73쪽), 교과서 참고하여 학습지 완성하여 제출						
	3	국어	3. 신라의 건국과 발전, 교과서 (56-60쪽) 교과서 참고하여 학습지 완성하여 제출						
	4	영어	2. Enjoying Local Culture C.대본(교과서163쪽참고) 녹음하여 전송						
	5	진로	다섯 손가락으로 표현하는 나, 학습지 완성하기						
	6	음악	교과서 100쪽 리코더 연습하기, 결과물 영상찍어 전송하기						
7	과학	물질의 구성, 교과서(12-48쪽) 교과서 참고하여 형성평가 학습지 풀기, 결과물 사진 찍어 학급밴드 개인 채팅으로 전송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생 :	(인)
소명여자중학교장 귀하									

※ 보고서 제출 기한 :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신청서

담임	부장	교감	교장
※ 반드시 학교장까지 4단 결재			

성 명		학 년 반	제 학 년 반 번		
신청 기간	20 년 월 일 ~ 월 일 () 일간				
	※ 허가 기간은 공휴일 포함하여 해당 학년 단위로 한다. ※ 위탁 희망 학교에 공문을 통해 위탁가능 여부를 최종 확인한 후 신청한 보호자에게 허가 여부를 통보 후 실시				
위탁희망학교	시도명() ()학교				
보호자명		관계		연락처	
교환학습 목적 또는 사유					
학습계획 및 생활계획					
위와 같이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학교장 귀하					

<서식 8>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의뢰서

수 신 : 학교장

참 조 : 담당부장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소속 학교	학교 전화번호	학년 반	담임명
교환학습 목적 또는 사유				
학생 관련 참고 사항				
위탁 교육 기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개월 ()일간			
담당 지도 교사				

위 학생의 「학교장허가 교환학습」을 의뢰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교장 (직인)

<서식 9>

「학교장허가 교환학습」 결과 통지서

※ 위탁 학교장은 다음 양식에 해당 내용을 입력하여 재적학교에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수 신 : 학교장

참 조 : 담당부장

학생 인적사항	학생명	생년월일	성별	전화번호
	위탁학교	위탁학교 전화번호	위탁학교 학년 반	위탁학교 담임명

◎ **출결상황**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질병	미인정	기타	

◎ **수상경력**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학년	봉사 활동 실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 자유학기활동상황

학년	학기	자유학기 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	⋮	⋮

◎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 교과학습발달상황

학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위 학생의 「학교장 허가 교환학습」 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20 년 월 일

○○ 학교장 (직인)